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2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발 의 자 : 김용범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10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하여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카드 수수료 지출이 증가하여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, 회원모집 및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.
- 반환규정을 법령근거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 (안 제10조

제3호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 반환 (안 제10조제5호, 안 제10조제6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민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잦은 사용 취소를 억제하고,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,
-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분쟁 해결기준」을 준용하여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-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 중 당해 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, 현재 영등포 제1·2스포츠센터 사용료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반환하고 있어, 조례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과는 맞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,
-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카드 수수료 지출 등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고 회원모집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. 일례로 영등포 제1·2스포츠센터에서는 2015년 총 사용료 수입금 59억 6,255만원 중 4.8%인 2억 9,047만원을 반환 했으며, 지출된 카드 수수료도 639만원에 이르고 있음.

〈2015년도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금 현황〉

(단위:만원)

구 분	총 수입금	사용개시 예정일 이후	
		반환금	카드 수수료
건 수	166,501	14,935	14,935
금 액	596,255	29,047	639

※영등포시설관리공단 제공 자료

- 따라서 영등포 제1·2스포츠센터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시설 이용자의 빈번한 사용취소를 억제하며,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.
- 다음으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·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을 통제하되,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반환하려는 조항과,
-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소비자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반환하려는 조항은
-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조문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조치로 보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6년 10월 일

발 의 자: 김용범 의원, 김재진 의원 외2명

1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하여 사용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카드 수수료 지출이 증가하여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, 회원 모집 및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.
- 환불조항을 법령근거에 따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할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(안 제10조제3호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 반환(안 제10조제5호, 안 제10조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비자 기본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
소비자분쟁 해결 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-18호)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”를 “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3호 중 “사용료 중 당해월을 제외한 나머지월을 전액 반환”을 “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4호 중 “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”을 “불가능한 경우: 사용료 전액 반환”으로 하며,

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: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전액 반환

6.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: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<u>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</u>	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<u>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
1. <생 략>	1. <현행과 같음>
2. 삭제 <2008.6.12>	
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: <u>사용료 중 당해월을 제외한 나머지월을 전액 반환</u>	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: <u>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</u>
4.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<u>사용료 전액 반환</u>	4.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 <u>사용료 전액 반환</u>

〈신설〉	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: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전액 반환
〈신설〉	6.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: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